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이종배 · 김민전
나경원 · 박수영 · 김성원
이양수 · 이성권 · 박충권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시한이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이 4월 30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30일 사이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음.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약 1년 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없는 참정권 피해를 겪게 되고, 국가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었던 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추가

로 발생하게 됨.

이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3조 제3항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제5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의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제60조제2항 후단 중 “제53조제4항”을 “제5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등록무효) ① 候補者登録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</p> <p>6. ~ 11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2조(등록무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제4항</u>----- -----<u>제6항</u>----- -----</p> 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</p>

